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황인구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|
| 의안<br>번호 | 93 |
|----------|----|

발의연월일 : 2018년 8월 16일

발 의 자 : 황인구, 장인홍, 김 경,  
채유미, 권순선, 장상기,  
여 명, 조상호, 김수규,  
최기찬, 전병주, 김달호,  
성흠제, 김평남, 권수정,  
박상구, 이준형, 김경우,  
이병도, 박기재, 송정빈,  
박순규, 김정태, 이동현,  
김호평, 김화숙, 김혜련,  
임종국, 이태성, 이광호  
의원 (30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재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폭염, 미세먼지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화재나 붕괴,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,
- 학교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법정 시수 이외에 교장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제8호).
-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시간을 법정 시수 이외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6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 
「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재난안전 : 교육활동 중의 홍수·지진·폭염 및 폭설·황사·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·붕괴·폭발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

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학교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<p>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 신 설 〉</u></p> | <p>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재난안전 : 교육활동 중의 홍수·지진·폭염 및 폭설·황사·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·붕괴·폭발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</u></p> |
| <p>제11조(안전교육의 실시) ① ~ 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 신 설 〉</u></p>   | <p>제11조(안전교육의 실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학교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|